開途國의 技術導入制度 概要〈下〉

—유럽諸國 및 기타 地域—

◉ 유 럽

▩ 포르투갈 ▩

外國投資院의 機能

企劃事項에 책임을 지고 있는 政府長官 관할하에 설치된 外國投資院은 포르투갈내에서의 直接的인 外國人投資 문제를 지도, 감독하며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도모한다.

포르투갈 外國投資院은

(가) 잠재적인 外國人 投資家 및 수출업자들을 받아드리며 지도한다. 또한 그들의 投資 또는 技術移管의 수행에 관한 여러 사항에 책임을 지고 있는 政府部署 및 산하기관을 대표한다.

뿐만아니라 이 기구는 포르투갈에서의 直接投資 또는 技術移管의 진흥 및 促進을 위해서 必要한 法律的 및 行政的인 조치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에 대한 意見을 제시하며, 또한 提案을 제출한다.

(나) 直接的인 外國人投資 및 技術移管에 대한 協定을 위해서 合法的으로 獲得한 허가내용을 承認한다.

(다) 계약당사국에서의 投資許可 承認에 관한 書類에 의견을 添附하여 政府에 提出한다.

(라) 해당 法律의 규정에 의해서 ①直接外國人投資 ②外國人 再投資 ③技術移管에 관한 협정등의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며, 또한 外國資本 導入의 실적이 있는 모든 會社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記錄을 確保한다.

(마) 直接外國人投資 또는 모든 技術移管에 대한 통제기구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申請書를 提出하고 施行한다. 단, 이러한 행위에 대한 權限이 法律에 의해서 다른 기구로 委囑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스페인 ▩

스페인의 外國 技術導入을 管掌하는 기구표임.

Organizational Setup for Regulating the Flow of Technology

1973年 12月 5日字 工業省 施行令에 의한 技術導入 評價 및 承認節次

1.3. 工業開發 및 技術局長 앞으로 出願書類를 3部 작성하여 提出하여야 하며, 이 申請書類에는 해당 契約書 3部를 添附해야 한다. 이 契約書는 이 施行令의 취지에 따라서 다음의 細部項目 1.5 및 1.6에 明示된 각서 및 證憑書類는 스페인語로 작성되어야 한다.

1.4. 각서에는 ①契約당사자들에 관한 정보와 資料 ②技術移管에 관한 技術的인 내용 ③協定의 범주와 조건 ④계약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모든 資料를 明示하여야 한다.

이 申請書의 해당 樣式 및 각서는 工業省에서 입수하여야 한다.

1.5. 證憑書類로는

(가) 申請人의 代表者를 明示한 公認性있는 書類.

(나) 申請人이 企業家인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工業登錄部記載事項 寫本 1部. 可能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사항에 대한 것을 添附할 것.

(다) 해당이 있을 경우에는 資本投資에 外國人 참여를 허용하는 政府의 결정사항에 관한 寫本 1部.

(라) 諮問 또는 事業開發에 관한 사항일 경우

에는 합의된 기술응찰내용 및 세부사양서.

(마) 工業省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其他 書類.

1.6. 1968年 4月 4日 公布된 施行令 第617號 第9條에서 言及된 공공기관 및 企業體들은 외국 고문이 제공하는 技術硏究 및 용역에 관한 契約을 締結하며 開發事業에 관여하는 企業體들은 상기 施行令에 의해서 設立되었다. 또한 해당 계약분야의 業務를 處理할 諮問 및 工業開發事業에 관여하는 企業體는 별도의 특별한 登錄部에 記錄된 적어도 2개의 企業體들로부터 必要한 諮問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제출하는 申請書에 證憑書類를 添附한다.

앞에서 言及한 證憑書類란 스페인企業들에 의한 明確한 여러 提案이다. 이것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기타 확인성 있는 證憑書類등을 망라한다. 만일 이러한 證憑書類를 앞에서 言及한 특별한 記錄部에 한 企業體만이 記錄되어 있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明示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申請者는 明示된 企業體의 응찰書類에 아울러 工業開發 및 技術局長이 발행하는 해당 證憑書類를 添附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處理하는 과정에서 이 施行令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등록 여부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工業開發 및 技術局 事務處는 公聽會가 열리기 전에 이와같은 모든 사례에 대한 사항을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1개월 이내에 물의가 있는 契約書 項目의 원인 및 결함들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許可事項은 동일한 契約當事者들이 서인하는 해당서류에 明示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치는 工業開發 및 技術局 事務處로부터 온 통신물에 言及된 처음에 결격사유라고 합의된 사항을 削除하거나 또는 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登錄取扱所의 機能

第2條 스페인내에 合法的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립기관 이외의 個人 또는 法人體들에 의해서 締結된 모든 형태의 技術移管契約에 대해서 工業省 및 貿易省은 다음과 같은 機能과 權限을 보유한다.

(가) 工業省은 外國技術이 스페인의 國家經濟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方法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 특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貿易省은 앞에서 言及한 契約書와 관련해서 外貨支拂인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第4條 현행 施行令에 言及된 契約登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工業省은 契約 또는 貿易省이 明示한 技術形態를 管掌하고 있는 政府部署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보고서를 提出하도록 要求하여야 한다. 契約登錄 申請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소요된 時間 및 해당 政府部署들이 그들의 보고서를 公布할 때까지 소요된 時間은 해당 행정절차법 규정에 副應해야 한다.

第5條 工業省 또는 해당정부부서의 견해에 따라서 해당 契約書가 기술수입국의 技術開發에 위협을 주는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당사자의 관리권을 제한하며 또한 그 기술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조치를 言及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와같은 契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입하는 행위는 거부되거나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와같은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이 施行令 第7條에서 言及된 效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注記한 후에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第4條에서 言及된 政府部署의 보고서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약사항은 등록부에 기입되지 못한다.

特히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그의 관계자들의 수출 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契約書는 貿易省으로부터 報告書를 받기 전에는 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

登錄의 거부 또는 登錄部에 注記事項을 添附하여 登錄部에 記載함을 許用하는 앞에서 言及한 타당한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國防을 위해서 기재를 生産하거나 또는 使用하기 위한 技術移管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된다. 이 계약서에는 國家利益을 위해서 必히

규제사항의 타당성이 明示되어야 한다.

技術移管에 있어 民間契約을 위해서 협조당사자를 규제하는 특별조건을 세부적으로 明示하고 있는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契約事項은 이 條項 第1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注記하지 않고 登錄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거부사항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明示하여 當事者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이 당사자에게는 지적된 결격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1개월의 기간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등록에 대한 새로운 申請을 하기 위해서는 앞의 條項에서 규정된 절차 및 期限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地域

▨ 나이지리아 ▨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立事務處 設立의 근거가 되는 聯邦施行令(1970年度 第60號)에는 이 事務處의 機能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1.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立事務處를 설치하며 (이 施行令에서는 앞으로 "國立事務處"라 稱한다)이 事務處는 이 施行令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機能을 수행한다.

2. 國立事務處는 연속성있는 기구이며, 그는 그의 대표적인 印鑑을 使用하며 쟁이가 있는 경우에는 "國立事務處"라는 名義로 모든 문제를 處理한다.

(2) 1. 이 國立事務處의 管轄機構로서 工業所有權國立管轄協議會를 설치한다. (이 施行令에서는 앞으로는 協議會라 稱한다)

이 協議會는 이 國立事務處를 위한 政策樹立 및 其他 이 施行令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이 協議體는 1명의 委員長과 다음과 같은 要員으로 구성한다.

(가) 聯邦政府部署, 經濟開發, 財務, 內部, 法部, 貿易 및 住宅 社會事業部의 해당대표 1명

(나) 國立科學技術處 대표 1명

(나) 國立次官委員會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에 의해서 任命될 나이지리아에 있는 여러 大學을 대표하는 해당 요원 1명

(라) 大學總長 및 校長들과의 協議를 거쳐서 해당 委員長에 의해서 任命될 나이지리아의 工業學校 및 工業專修大學을 대표하는 1명씩의 요원.

(마) 해당 과장급 요원

3. 이 委員長은 聯邦工業部의 영구 장관직을 맡게 되며 또한 영구관직의 직권으로 그는 수석 서기를 지명할 수 있다.

4. 이 施行令 규정에 대한 附則은 이 協議會의 內規에 明示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게 된다.

(3) 委員長은 이 協議會에 일반적인 사항 또는 특수사항에 대한 지시를 한다. 그러나 이 施行令에 의해서 이 協議會 또는 國立事務處가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協議會는 이와같은 지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協議會는 당사자들에게 지시를 준수할 것을 종용한다.

(4) 이 施行令 第2(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立事務處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外國技術을 判別하고 選擇하는데 必要한 보다 效率的인 方法을 促進한다.

(나) 外國技術의 移管을 위해서 모든 契約 또는 協定을 체결하는 나이지리아 當事者에게 가장 유리한 契約條件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에게 바람직한 技術을 開發한다.

(다) 도입된 技術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效率的인 方法을 제시하며,

(라) 이 施行令이 效力을 발생한 날에 나이지리아에서 유효한 상태에 있는 모든 契約 또는 協定 및 이 이후에 外國技術을 나이지리아 當事者에게 移管하기 위해서 체결된 모든 契約事項을 등록한다. 이와 아울러 앞에서 言及한 사항의 蓋然性에 편견없이 공평한 방법으로 그와같은 모든 契約事項이 그의 目的 또는 내용이 이 國立事務處의 견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견해란 全面的이거나 부분적이거나 다음과 같은 目的에 聯關된 경우를 말한다.

가. 商標使用

나. 特許가 인가된 發明을 이용할 수 있는 權限

다. 計劃, 圖面 작성교본 또는 지금까지 言及한 모든 기술원조사항을 작성하는데 必要한 專門的인 기술지식의 제공

라. 기본적이거나 또는 세부적인 工學技術의 제공

마. 機械 및 工場施設의 提供

바. 運營分野 職員 또는 管理補助의 제공 및 요원 訓練 양성등이다.

(마) 이 施行令에 의해서 登錄된 모든 契約書 또는 協定施行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 터어키 ▨

技術移管協定 評價 基準은 다음과 같다.

技術移管에 관한 모든 協定은 營利商業的, 財政的 및 工業的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해당 事業을 評價하는 경우 商務省은 터어키에 도입될 해당기술의 ①新案性, ②그 結果로 기대되는 生産의 증가 ③최소한도의 수출물품 (일반적으로 15%가 예상됨) 등을 감안해야 한다.

터어키의 國立企劃機構 특히 그 산하에 특별히 설치된 外國投資委員會는 商務省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①터어키의 開發計劃에 순응하고 있는가의 여부 ②그의 雇傭에 대한 效果 ③그의 經濟的인 效率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細部項目別로 檢討·評價한다. 이 국립기획기구는 또는 해당 政府의 여러 부서 특히 務財省과 이 事業의 技術的인 측면에 관해서 協議한다.

이 경우에 財務省은 다음과 같은 基準을 적용한다.

(가) 協定의 유효기간은 5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책임 당국의 承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나) 로열티는 總額의 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해당 協定은 터어키의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 代金이 一時拂로 支拂되어서는 안된다.

(마) 稅金 및 관세는 터어키에서는 許可權所有者의 로열티로부터 支拂된다.

(바) 技術移管 당시에 유효한 外換率이 적용된다(外換率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다).

(사) 모든 代金은 兌換화폐로 支拂된다.

(아) 이 協定의 유효기간이 滿了된 후 터어키 회사는 外國의 商標를 使用하지 않고 生産活動을 계속할 수 있다.

(자) Know-how는 일정한 금지된 부문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協定期間中 改善할 수도 있다.

(차) 許可에 의해서 터어키에서 생산된 製品販賣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카) 許可權所有者의 피보증인을 위한 證書에는 피보증인에 의한 生産品의 質은 허가권소유자의 製品과 同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타) 純販賣價格을 로열티, 모든 포장, 수송, 保險 및 세금 算出을 위한 기준으로 取扱해야 하며 또한 輸入價格은 그 販賣價格으로부터 節減되어야 한다.

(파) 터어키를 방문하는 許可權所有者를 위한 技術人들에게는 숙박료, 체재기간중의 食費 및 교통비이외에는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하) 物議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파리의 國際商工會議所 中裁委員會가 문제를 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工業·技術部 특히 工業局은 協定에 수록된 數 많은 經濟 및 技術問題들을 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科學 技術局 및 工業所有權과의 協議下에 모든 契約書는 技術 및 經濟的인 관점에서 檢討 審査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協定들을 檢討 評價하기 위해서는 내부지침 (非公開됨)이 상세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즉 터어키 국내에서 유사한 기술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가의 與否.

(2) 이 해당 技術이 협정에 있어 新案의 대상이 되는가의 與否.

(3) 어느정도까지 外貨嫁得水準을 증가시켜야 하고, 雇傭을 증대시켜야 하며, 또한 所得을 향

상시킬수 있는가의 與否.

(4) 特定한 事業에 의한 生産高중 外國資本比率이 어떠한가 등이다.

—禁止條項—

다음과 같은 내용의 條項은 협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輸出의 制限

—2개이상 요구의 동시 結合

—최종 및 中間製品價格의 價格結定

—年間로열티 최소액수

—技術價値에 대한 과도한 대금 支拂

—터어키 국내산 原料, 部屬品 및 부품기재사용에 대한 制限事項

—신빙성 없는 品質管理

—生産 및 수출의 제한

—協定의 效力이 滿了된 후에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

—一方的인 許可條件

—商標使用에 관한 制限事項

모든 協定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契約期間은 5年의 期間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許可權所有者는 特許의 有效性을 보장하며 또한 第3者에 대항하여 보호할 것을 保證한다.

(다) 모든 契約當事者는 사전통고없이 契約을 滿了시킬 權利가 있다.

(라) 로열티는 최대한 純販賣高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金額이다.

(마) 許可權所有者는 許可權을 양도받은 당사자가 製造한 生産品의 品質이 그의 製品과 같은 質을 갖게 될 것을 保證해야 한다.

대규모의 허가양도망을 보유하고 있는 허가권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제공된다.

財務省의 點檢表를 工業技術省의 것과 비교하는 경우 그들은 어김없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節次—

法律第6224號에 의하여 터어키의 國內企業體가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신청서 4部를 작성하여 商務省 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商務省이 事前檢討 評價를 한 후에 최종적인 評價와 건의를 하도록 申請書 4部를 作成하여 國立企劃機構에 제출한다.

이 機構의 評價 結果를 근거로 長官協議會는 政府의 官報를 이용해서 해당 케이스에 관한 施行令을 公布한다. 이 施行令이 事業을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 施行令은 앞에서 言及한 節次들을 규정한다.

—36面에서 계속—

① 通常使用權이 設定登錄要件에 違反하여 登錄 되었을 때, 또는 그 規定에 違反하게 된때(1號)

② 虛僞申請에 依하여 登錄되었을 때(2號) 實質的으로 前號와 같은 內容의 重複規定에 不過하다.

③ 通常使用權의 移轉規定(法第32條)에 違反되었을 때(3號)

한편, 商標權者와 通常使用權者는 共同으로 設定登錄抹消申請을 할 수 있고(同條2項)特許廳長은 그 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고 各當事者에게 通告하여야 한다(同條3項).

(5) 通常使用權의 移轉

通常使用權은 一般承繼만이 認定되고, 特定承繼를 사실상 別個의 通常使用權의 設定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許容될 수 없다는 趣旨이다.

通常使用權의 移轉登錄은 第者에 대한 對抗要件이다(同條 2項).